정책방향 토론회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3/6(화) 오후 3시	**경제민주화**
3/7(수) 오전 10시	**복지**
3/7(수) 오후 1시	**노동**
3/7(수) 오후 3시 20분	**재원**

경제민주화

프로그램 1

15:10 발제1 **민주통합당 정책방향**

15:25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1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안)」[1)]
-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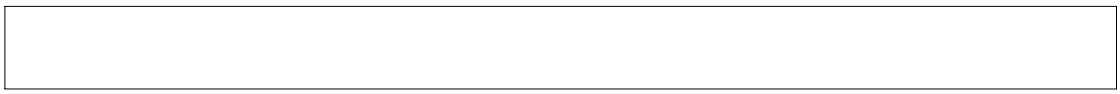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 정책방향

I. 들어가며

Ⅱ. 경제 민주화의 세 범주

2-1 자본사이의 민주화

2-2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

2-3 경제와 국민 사이의 민주화

별첨자료

통합진보당 2012 총선

재벌·중소기업 공약

재벌독점 해체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 !

불공정거래 근절 !

1. 재벌규제법으로 재벌독점 해체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연구실장 김상덕(ksh6501@hanmail.net)

1. 재벌규제법으로 재벌독점 해체

공약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계열분리명령제"로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지분으로 계열사의 의결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기업의 이익보다 기업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용행위 방지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

4.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5.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출자총액제한제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법 개정으로 공식 폐기됨.

-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졌는데 **3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은 **2011**년 **1,461**조으로 국내총생산**(GDP) 1,080**조원보다 **26%**가 더 많음
  2011년 **30**대 재벌의 매출액은 **1,134**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95%**에 달함

- 계열사 출자가 자유로워져 계열사수가 **2006**년 **645**개에서 **2011**년 **1,019**개로 증가

- **10**대 재벌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12**년 **1**월 현재 **681**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1,244**조원의 **56%**에 이름

<표> 10대 재벌 상장사 시가 총액 비율

(단위 조원)

년 도	2008년 말	2009년 말	2011 8/1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622	968	1,339
10대재벌 상장사 총액	277	448	699
비율	44.5%	46.3%	52.2%

자료 : 이정희 의원실**(2011)**

- **10**대 재벌 제조업체 매출 비중이 **2005**년 **34%**에서 **2010**년 **41%**로 높아져 **2007**년 사실상 출자총액 제한법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표> 10대 재벌의 제조업 매출 비율

(단위 조원)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제조업 매출	1,196	1,221	1,346	1,604	1,613	1,840
10대그룹 제조업 매출	412	440	474	591	612	756
비율	34.4%	36.0%	35.2%	36.8%	37.9%	41.1%

자료 : 이정희 의원실**(2011)**

- 또한 공기업안수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지분 **10%**이상)에 대한 출자예외인정 조항,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직접적인 생산판매관련, 산업관련을 확인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조항들은 사실상 재벌일가의 소유경영독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

○ 순환형 출자는 계열사 간 피라미드 주식소유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함으로써 독과점화, 재무구조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목표

○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고,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 민주화를 유도하고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방지

▪ 방법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여 문어발식 다각경영을 통제하며,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규제

-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외국인투자(외국인지분 **10%**이상), 법정관리·부실기업 등에 주어지는 예외인정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함

○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

- 상호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짐, 재벌 계열사 간에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이른바 고리형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소수지분으로 그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따라서 '상호출자 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순환고리에 대하여 **1%**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

○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및 골목상권 독점 행위 차단

- 공정거래법 1조 목적에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동(담합) 규제를 통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보장 소비자의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실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과거보다 비대해진 재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새로운 규제의 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 시행중인데,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 공정거래위가 직접 금융계열사(또는 일반계열사)에 계열분리를 명령하여 관계된 지분 매각 등을 조치하여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음. 재벌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고 나아가 골목시장 빵가게 체인까지 잠식한 계열사를 분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 수준의 자발적 질서만으로는 재벌 독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열분리명령제 또는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10**대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1%**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1.1%**만 가져가야 함, 그러나 계열사 등을 통한 지배력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5%**에 달해 소유, 지배 괴리도가 큼

- 총수 일가, **2**세, **3**세들에게 그룹 전체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 **3**세들에게 전용하려는 유혹이 큼.
  따라서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

▪ 목표

○ 재벌 소유, 지배 괴리도가 커서 사익추구 행위가 일상화돼 있는 점을 극복

▪ **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

○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상법 개정)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
-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

○ 독립이사제도 도입(상법 개정)

-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
-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사는 제외되어야 함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자원의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과 비리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자질도 없는 주체들이 불법으로 돈을 끌어 쓰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계열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 경제적 집중이 강화되고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
- 재벌들은 제2금융권을 자회사로 거느려 이들 사금고화하면 부실 우려가 큼.

○ 금산분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림

- 더 나아가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여 국회 계류중임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수가 2006년 45개, 2009년 55개, 2011년 67개로 높아지고 있고, 10대 그룹소속 금융계열사는 46개에 이름

<표> 1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현황 (단위 원)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	자본총액	금융계열사
삼성	10	186조 5,610억	26조 1,070억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현대자동차	4	32조 3,080억	4조 6,050억	에이치엔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SK	1	2조 9,680억	4,370억	에스케이증권
LG	1	5억	3억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롯데	10	11조 8,290억	1조 9,530억	마이비,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부산하나로카드, 충남스마트카드
포스코	1	370억	360억	포스택기술투자
현대중공업	5	1조 8,370억	5,860억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GS	1	70억	70억	지에스자산운용
한화	10	88조 9,590억	7조 4,600억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대생보험심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티엠에스,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투자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KT	3	2조 1,130억	2,750억	케이티케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엘아이지에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총계	46	306조 6,195억	41조 ,4663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4**월 기준, 공기업은 제외하되 민영화된 공기업은 포함

▪ 목표

○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재벌이 금융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

▪ **방법**

○ 금산분리 완화책인 **2009**년 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원래대로 복구

- 은행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를 다시 **4%**로 제한하고 사모펀드 기준 강화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규제
- 산업자본이 소유한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금산분리 원칙 적용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으로 금융계열사 사금고화 금지

4.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재벌 총수의 소유경영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가 필요함. 현재 재벌 주식은 총수 및 특수관계인지분을 제외하면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참가하고 있음. 외국인들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창출, 국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기관투자자 중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2011**년 말 **62**조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증시 시가총액의 **5.1%**를 보유.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며, 보유지분 **5%** 이상 주요기업을 보면 **KT(8.7)**, 삼성전자**(6.0)**, 호텔신라**(9.3)**, 포스코**(6.4)**, 하나금융**(9.4)**, 엘지전자**(8.3)**, 엘지화학**(6.7)**, 우리금융**(5.1)**, **SK**텔레콤**(5.1)**, 현대제철**(9.1)**, 한화**(7.2)**, 기아차**(7.0)**, **KB**금융**(6.1)**, 신한금융**(7.1)**, **S-Oil(6.0)**, 현대중공업**(5.1)**, 하이닉스**(9.2)**, 제일모직**(8.7)** 등이 있음.

○ 현재는 정부의 입김으로 연기금이 경기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료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인 기금운용본부는 상설운용조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주적 통제에 있기보다는 소수의 금융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임.

▪ 목표

○ 재벌 총수와 외국인 대주주의 단기성과식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대기업의 지배구조도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 국민연금기금, 종업원주식소유, 퇴직연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기금의 경영권 행사로 대기업 과점체제와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내유보금을 쌓고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나, 중소기업 이윤 탈취 등을 감시·통제하여 시장의 공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 방법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별도의 독립 기구로 운영.

○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국내산업 발전, 고용확대, 공익성 강화의 방향으로 경영권에 개입하여야 함.

- 지분율 **5%**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 **100**개 이상의 우량 대기업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또는 **2~3**대 대주주이므로 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며 사전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5.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함.

-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개혁논의에 있어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논의되지 못함.
-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노사협의회 수준을 넘어서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무엇보다도 필요.

○ 기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간산업/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
- 민주노총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에서 '경영참가제도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사주제도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음.
- 도산 및 경영악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리해고 및 대량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되므로 경영의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목표

○ 노사협의회법상 노동자대표의 개입력과 결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감사회에 노동의 참여결정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음

▪ 방법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교섭에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및 배제 규정 삭제 :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법상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대표의 결정권 강화 : 경영인사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증권거래법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및 목적 변경,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규약의 재개정과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명문화
-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의 완화와 문제점 보완: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원 공동소유 활성화, 우리사주 구매기금의 조성과 정부의 세제혜택

○ 중장기적으로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1000**인 이상) 경우 노동자대표 및 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노사동수 참여 및 결정권 부여
- 일정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사내외 이사수의 동수화, 사외이사의 **1/2** 노동자 대표 선임. 노동조합에게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부여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약

1.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전환
   재벌의 성장이 가져오는 적하효과가 소멸되고 오히려 투자기피, 외주·아웃소싱, 불공정거래, 고환율로 물가폭등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해악적인 결과 초래.

2.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중소사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과 고발권 부여

4.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파견근로, 사내하청,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경우 지원금 지급

1.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은 양극화와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벌은 고환율과 부자감세, 규제완화와 독과점 등 온갖 특혜로 성장하였지만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소멸되었고, 오히려 국내투자 기피, 외주·아웃소싱으로 고용불안, 불공정거래, 물가폭등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해악적인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은 재벌의 소수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등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주도의 광범한 부품·소재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동반하지 못함

- 대기업은 중위기술에 바탕한 가공무역으로 완성품을 수출하는데, 수출 고부가가치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가 2005년을 100으로 볼 때, 2010년 101.2로 정체되어 있음. 미국 115.2, 일본 108.5 등 주요 선진국(114.7)에 비추어 저가수출임.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는 OECD국가 중 23위로 낮은 수준임.

[그림] OECD 국가별 기술무역수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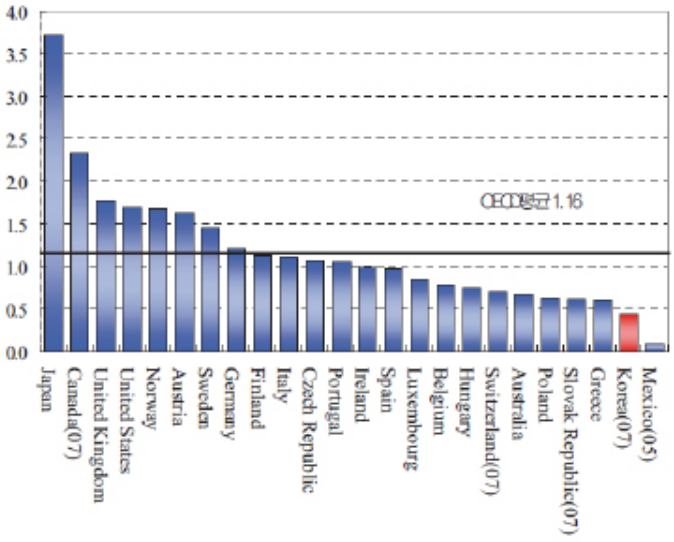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 한국은 수출 1위 품목이 74개로 미국의 12% 수준임, 세계 수출 경쟁력 1위 품목수를 보면 한국은 74개로 중국 1239개, 미국 633개, 독일 852개, 일본 230개에 비해 크게 저조함.

- 최종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 중간재 비율이 한국은 37%로 미국(15%), 일본(17%), 중국(20%), 독일(24%)에 비해 매우 높음. 즉 한국 수출품의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낮아 수출이 증가해도 원자재 및 중간재가 더 빨리 증가하는 수입 의존적인 수출임.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산

업에서 고위 기술은 일본 등 미국,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저위 기술은 중국의 잠식이 발생하고 있음.

<표> 2010년 소재산업의 교역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일본	중국	중동	유럽	미국	중남미	합계
무역수지	-142	85	30	-4	-4	10	123

출처 : 지식경제부 (2011)

-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표>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계수

년도	소비	투자	수출
1990	0.192	0.284	0.309
2000	0.211	0.346	0.367
2009	0.253	0.316	0.439

출처 : 경제통계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1)

▪ 목표

○ 내수경제와 고용창출(전체 고용의 88%)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과 동반성장으로 경제의 양극화와 불균형, 대외의존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함.

▪ 방법

○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 발전으로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

○ 소수 대기업의 조립가공에 의한 최종재 중심 무역구조를 중소기업이 주체인 부품·소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 산업의 수출 성과가 내수로 파급되는 주요한 경로이며, 다품종대량생산으로 주된 생산주체가 중소기업이므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의 지렛대가 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함)

2.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대기업에게 이전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등 대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왔으나 대·중기업 양극화 해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대기업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기 위함.

▪ **방법**

○ 적용대상: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시행방식: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협약 체결

○ 초과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활용

- 기금 조성방법 : 대기업의 목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원하청이 정한 배분규칙(예 **50:50**)에 따라 납품업체 몫(**50%**) 중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기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 중소기업에 분배된 초과이익 중 **50%**이상을 인건비 인상, 교육비 등으로 종업원들의 임금·후생복지 인상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담당

○ 이익공유기금의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혜택 제공

- 적용대상기금: 기존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이외에 이익공유기금 추가
- 세액공제대상: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

○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제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적용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3. 중소기업 보호,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성장은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된 납품관계를 통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획득한 성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임

○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제 조사를 요구할 뿐,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 **2008~2010**년 동안 피해 업체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건수는 대폭 축소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처벌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금액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짐**(2010**년**)**, 또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분석 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12.9**조 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008**년 **69%, 2009**년 **67%)**, 이는 대기업의 폐쇄적인 내부시장 확대로 나타나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목표

○ 불공정거래와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함

▪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 정부 성향에 따라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일상적 감독 기능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대통령의 임명뿐 아니라 국회의 추천비율을 넣어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중소사업자조합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핵심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과 중소기업과의 이윤 공유제 확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임

○ 기술자료 유용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의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강화

-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전체 매출액의 **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5%)

- **2011**년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정부안 : **(세후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정부안은 세후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세액산출시 몰아주기 거래비율의 **30%** 초과분만을 반영하므로,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안에 비하여 산출 세액이 절반 이하.

*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의 기준만으로는 산업 구조상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움.

4.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 소득세 법인세 공제

- 파견근로, 사내하청,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경우 해당 인원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경기악화와 경영위기 시 고용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조정지원'제도가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임

○ 여러 가지 실효성 없는 제도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정규직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해당기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 해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계산한 정규직 전환자 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대책 중심으로

1. 논의의 출발 : 두 개의 큰 화두

2.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1) 우호적 요인

□

□

□

2) 개혁 전망 불투명 :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50%는 될까?”

□

□

3. 개혁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1) 두개의 엇갈린 전망

2) 선거 국면 활용

□

□

□

3) 개혁의 디자인 : 2개의 전략과 4개의 전술

□

재벌위주 성장전략	탈재벌 새로운 성장전략
재벌 중심 (낙수효과)	재벌+혁신 중소기업 두개의 성장축
수출 중심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선 성장 후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육체경제	지식경제(학습)
자본 중심	사람 중심
이윤 극대화 최우선	사회 책임 중시
(지배)주주 중심	이해관계자 중심
일 중심	삶과 일의 조화

□

4. 여야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정책 리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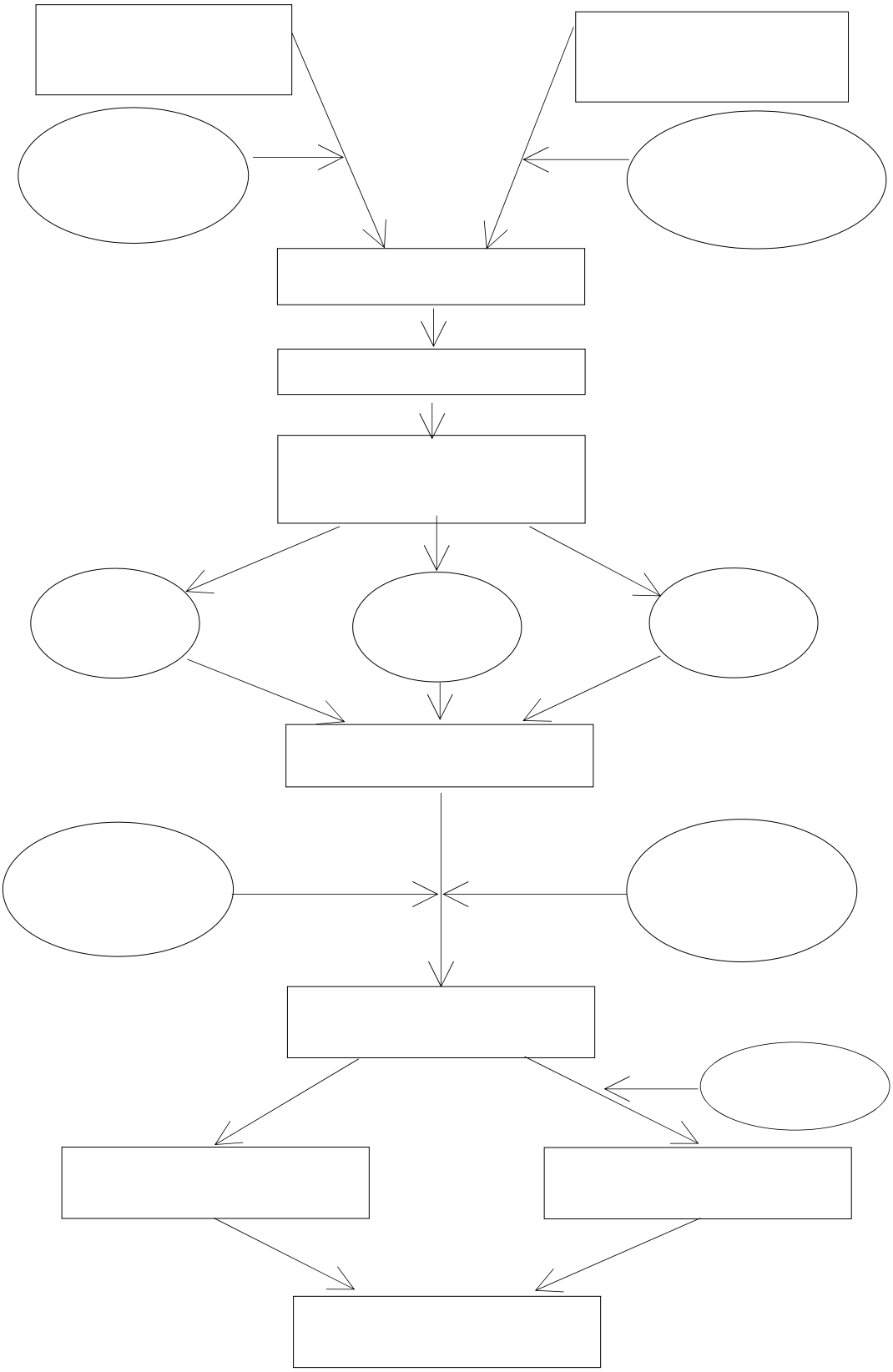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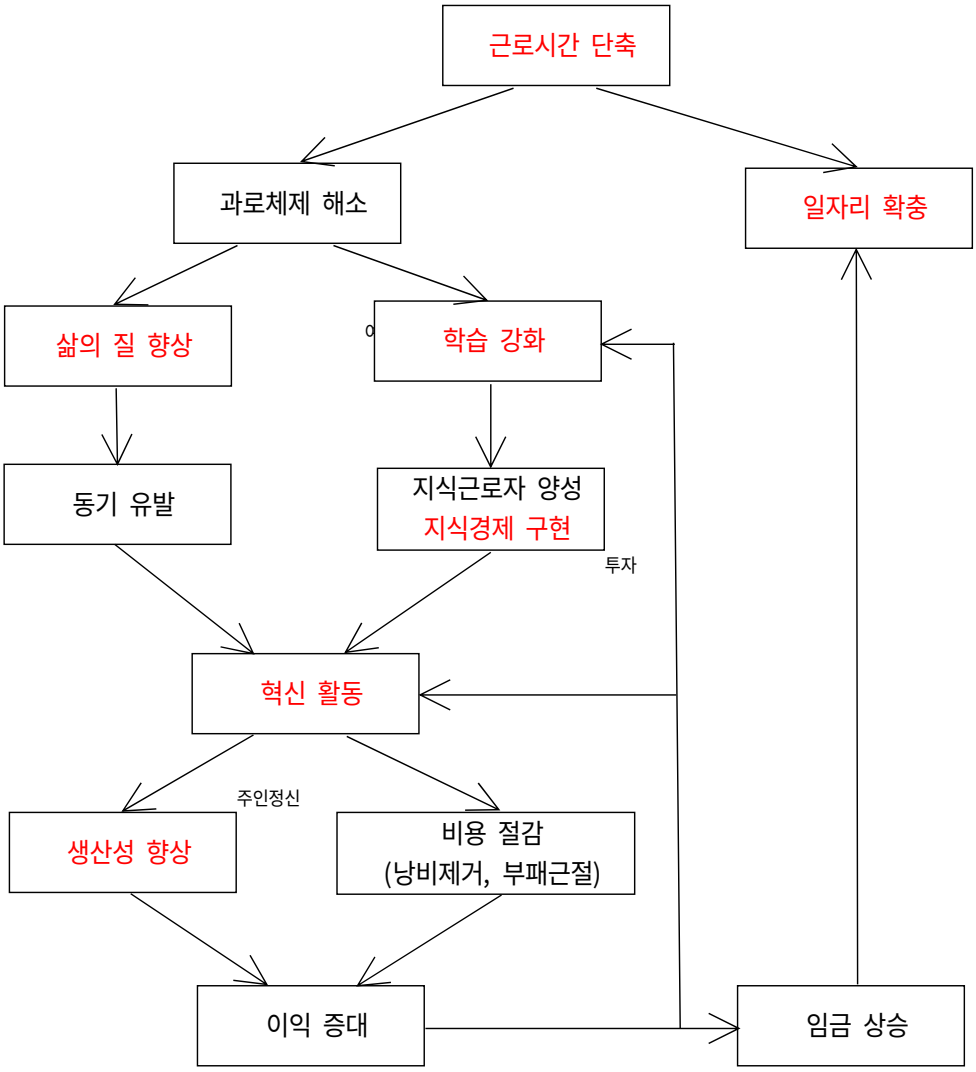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
과로체제 해소
일자리 확충
삶의 질 향상
학습 강화
동기 유발
지식근로자 양성
지식경제 구현
투자
혁신 활동
주인정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낭비제거, 부패근절)
이익 증대
임금 상승

구분	민주당	진보당	새누리당
재벌개혁 대책	-출총제 부활(10대재벌 30%)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부채비율,지분보유 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9%→4%) -담합 리니언시제도 개선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현저성,경쟁제한성 완화) -기업범죄 유전무죄 풍토 쇄신 (기업인 범죄 최저형량 7년 이상·기업인 사면 제한) -사회책임 공시제도 -재벌특혜 정보공개 -다중대표소송 -증권 집단소송 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보호 강화 ---------- <검토> -계열분리청구제 -재벌세 신설 검토	-출총제 부활(자산 10조 25%)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 명령제 -재벌 총수일가 사익추구 근절 -상장사 대주주·임원 자격제한 -독립이사제도 -금산분리 강화(9%→4%,금융지주회사법 개정,보험사도 금산분리,금융계열분리)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노사공동결정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내부거래 정기조사와 결과 공표,현저성 삭제,수의계약 공시확대와 기존법 강화) -중대한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도입 -엄정한 법집행 (사면권 억제와 기존법 강화) -상장 및 대기업집단에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ISO 26000 적극 수용 권고 ---------- <반대> -출총제 부활 -재벌세 신설
중소기업 대책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시 경영진·지배주주 처벌강화 -납품단가 부당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점진적 확대)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재벌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공공사업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 보호 -중기 인력·R&D 지원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IT·SW 생태계 구축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수 확대 등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공정위 강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및 고발권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중소기업 업종 기업결합 제한, 기존법 강화) -부당단가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 진입 한시적으로 제한 -기존 진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조처 확대

대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 서론

2.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

3. 환상형 순환출자의 효과 및 향후 정책방향

4. 종합

<첨부 1> (부당내부거래 관련) 회사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 검토

1. 문제의 제기

2. 출자총액 제한

3.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4. 부당 내부거래 금지

5. 계열분리청구제/계열분리명령제

6. 일감 몰아주기 규율

7. 재벌 총수에 대한 규율 강화

8. 금산 복합 그룹 통제: 금융 감독

9.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재벌개혁 과제 및 실현방안, 중소기업 보호방안

1. 서론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의

3. 재벌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논의

재벌 및 중소기업 정책 관련

1. 재벌개혁 관련 제도의 설계와 실현방안: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중심으로

개정일	주요 내용
’86.12.31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자산 4,000억 원이상)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93.2. 30대기업집단으로 변경/’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
’98.2.24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99.12.28 (8차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일 ‘01.4.1)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제도시행당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02.4.1 (시행령)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04.12.3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6조원 이상 기업집단(시행령) – 4가지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①지배구조모범기업(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요건 충족기업), ②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계열사간 출자단계가 2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④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 적용제외·예외인정 보완(남북교류사업·SOC사업·기업도시시행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등)
’06.4.14 (시행령)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괴리도 졸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4인이상 전원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서 총수의 2/3이상)
’07.4.13. (12차 개정)	○ 출총제 대폭 완화 –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 6조원 → 10조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 (순자산의 25% → 40%) 등 –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예외인정 해주던 것을 요건충족시 계속 출총 예외인정
‘07.7.13. (시행령)	○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소속 모든 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2009.3.3)

새누리당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유지,
민주통합당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10대 재벌에 순자산의 40%까지만 출자 허용,
통합진보당	출총 부활(자산 40%)의 실효성 미약, 10대 집단별 맞춤형 재벌개혁, 순환출자 전면 금지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화 등),
경실련	자산 5조 이상 그룹 대상, 출자한도액 25%로, 순환출자 전면 금지(기존 출자는 의결권 제한, 신규 출자는 매각 강제)

2. 중소기업 정책

업종	계열사명	2010	2009	2008	2007	2006
도·소매	롯데쇼핑(주)	13,516,928	11,535,281	10,509,251	9,768,132	9,055,880
	(주)이마트슈퍼	251,203	213,129	193,443	168,204	161,998
	홈플러스(주)	5,811,782	5,182,366	4,586,318	4,065,936	666,288
	홈플러스테스코(주)	1,793,604	268,703	1,566,791	1,576,725	87,264
제과, 빵집	씨제이푸드빌(주)	738,176	648,967	587,703	497,236	286,011
	에스피씨(주)	26,896	24,749	15,436	10,735,2010	7,722
	(주)파리크라상	1,312,611	1,001,578	783,375	622,347	495,853
	(주)보나비	22,652				
	아티제블랑제리(주)	70,625	28,278	4,899		
	(주)조선호텔	180,472	178,284	165,111	167,299	158,186
	조선호텔베이커리	167,777	136,622	134,192	122,931	86,720
	(주)한화갤러리아	320,474	311,551	285,449	249,736	234,161
한식, 비빔밥	씨제이푸드빌(주)	738,176	648,967	587,703	497,236	286,011
	(주)아워홈	1,124,742	1,011,071	881,075	750,294	638,853
음료	코카콜라음료(주)	700,520	604,520	534,959	461,585	513,683
패션,명품	제일모직(주)	5,018,594	4,261,096	3,727,783	3,112,403	2,843,803
	신세계인터내셔날	583,188	439,017	359,046	276,433	222,491
	(주)비엔에프통상		27,140	38,343	26,968	25,159
자동차 수입	한국상용차(주)	32,925	49,131	52,301	58,745	46,602
	피아트디앤씨(주)					
	센트럴모터스(주)	42,213	50,840	67,849	78,044	59,793
	더클래스효성(주)	300,106	177,207	134,142	118,760	103,79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1,126,451	675,130	543,166	502,971	485,059
	디에프엠에스(주)	41,767	36,125	80,484	56,654	44,310
	한국도요타쯔우쇼	147,079	166,098	126,261	103,363	66,863
	혼다코리아(주)	164,675	306,052	235,696	161,969	85,970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123,950	74,799	12,109		

새누리당	사익추구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격한 법집행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마련, 중기 핵심역량강화와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10대 정책과제
통합진보당	경제민주화는 '관계의 민주화', 특히 재벌-중기 문제는 자본사이의 민주화(공정위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중기사업자 조합에 불공정거래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기술자료 유용시 징벌절 손배도 확대)

참고문헌

복지

프로그램 2

10:10 발제1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확충방안**

10:30 발제2 **통합진보당의 믿음 가는 복지정책**

목차 2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확충방안

❑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의 기본 원칙과 적용기준**

❑ 보편적 복지의 기본 원칙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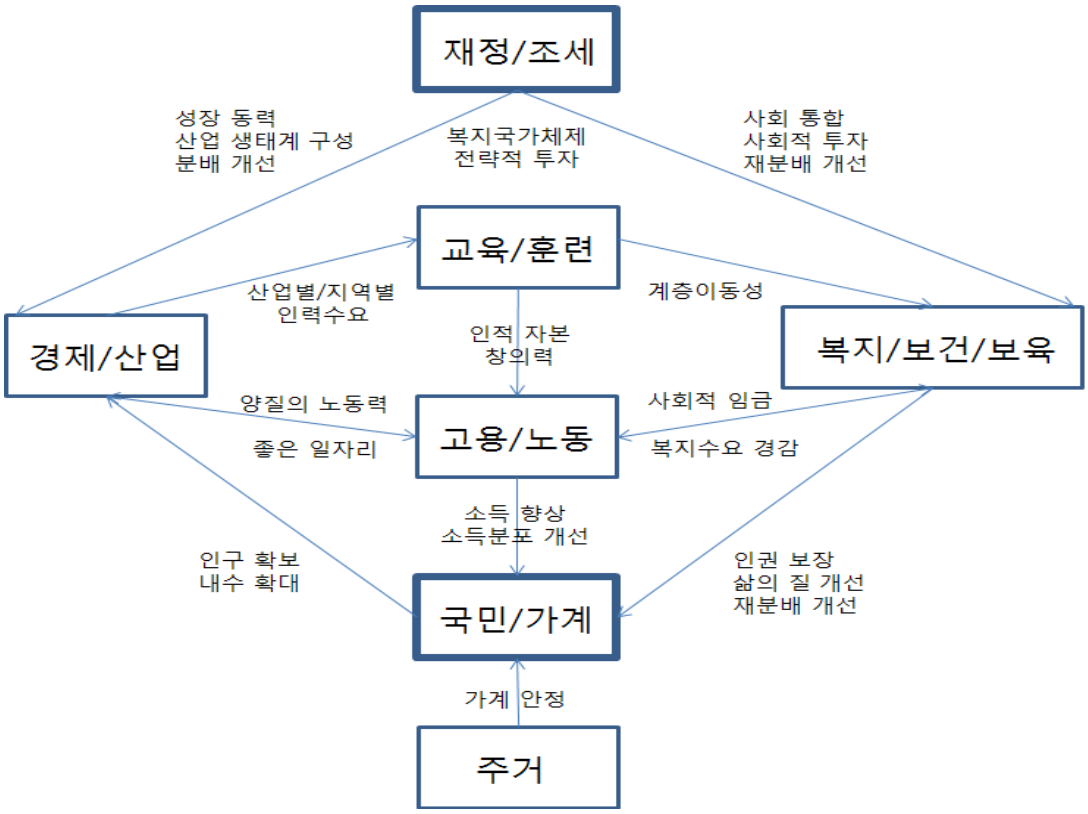

❑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주요정책

믿음가는 복지정책! (통합진보당)

2012	中

책임 있는 복지공약과 실천에 대한 기대

토론문

1. 한국복지체제에 대한 비전

2. 소득보장분야: 쟁점(보편적 소득보장)

3. 사회서비스분야: 쟁점(공공인프라 확충)

4. 일자리분야: 쟁점(좋은 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5. 복지재원: 쟁점(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마련)

선택 2012,
한국 사회의 사회정책 10대 과제[12)]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2. 사회보험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

3. 보편적 복지제도 구축 및 재원 마련

4. 노인 등 빈곤문제 해결

5.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인구정책의 전략적 실행

6.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7.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공급 체계의 혁신

8~9. 사회통합적 교육개혁 및 주거복지의 실현

10. 통합적 사회정책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회부총리 신설

노동

프로그램 3

13:10 발제1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13:30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3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보도자료

발신일 연락처
소속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담당 이동호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가 번지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 정책 발표
- 차별시정,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조건 적용률(%)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98.0	32.4
건강보험	98.8	35.8
고용보험	83.0	34.5
퇴직금	99.5	27.2
상여금	98.1	31.8
시간외수당	73.1	16.3
유급휴가	93.7	24.3
주5일제	68.0	30.1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김성혁

각 정당 비정규 정책에 대한 토론문

1. ‘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

2. “비정규 정책” 에 대한 평가의 기준

3. 새누리당[14)]

4. 민주통합당[15)]

5. 통합진보당[20]

각 당의 노동공약 비교검토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노동관련 토론문 (김성혁 작성. 2012. 3. 7) - 보도자료 (2012. 2. 12) '19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조춘화 작성. 2012. 3. 7) - 매일노동뉴스 보도(2012. 2. 27)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 4·11 총선 노동공약 발표' - 보도자료(2012. 1. 31)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 정책발표'	- 보도자료(비상대책위원회, 2012. 2. 7)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 뽑는다'
- 5대 노동공약	- 노동공약: 3대 정책약속, 30개 실천과제	- 비정규직대책

1. 현실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과 차별) • 기간제와 간접고용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 낮은 노조조직률 • 낮은 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과 차별) • 기간제와 간접고용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 낮은 노조조직률 • 낮은 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 고용불안(정리해고 남용) * 부실한 고용안전망 * 부족한 일자리	- 비정규직 • 기간제 (차별과 저임금) • 간접고용 남용

2. 목표 제시 수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비정규직 25%로 감축 - 간접고용 축소(파견 폐지) - 노조조직률 20%, 단체협약 적용율 50% - 평균노동시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간접고용 축소 - 평균노동시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 신규일자리 338만개 창출	-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3. 핵심 정책목표 실현 방안 비교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별시정제도 개선 -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지원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용공시제도 도입과 조달정책의 연계	-비정규직에도 경영성과급 지급 -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파견법 전면 폐지 - 직접안정법에 불법도급과 적법 도급의 기준을 명문화 -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 공공부문의 외주용역과 민간위탁 제한	-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기준 명시 (파견법 개정) - 파견기간 초과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파견법 개정) -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혜택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제정 (차별해소, 도급대금 보장 등으로 원청의무 규정, 도급업체 교체시 고용과 근로조건 승계)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실노동시장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 노동시간 상한제, 휴식권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유통업체, 공공건설현장 주5일제 - 소득보전기금 설치로 임금하락 없이 노동시간 단축	- 5인미만 사업체 주40시간 적용 -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 휴일특근 초과근로에 포함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최저임금법 개정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익성 강화	- 최저임금법 개정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공익성 강화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특수고용노동자, 간병·청소·보육노동자, 교사, 공무원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조설립권 - 산별교섭제도화 - 산별협약 적용율 확대 - ILO 결사관련 협약 비준	- 노동자 단결권 사각지대 해소 -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및 단체협약 적용율 제고 -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 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쟁의권의 부당한 제약 일소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 해고회피 노력하지 않으면 '경영상 필요성' 인정하지 않도록 법개정 - 절차적 요건 강화 -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	

4. 나가며

토론문

1. 양 정당의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비교

2. 전반적인 평가와 실효성 여부

3. 의견 또는 제언

재원

프로그램 4

15:30 발제1 **민주통합당 정책방향**

15:50 발제2 **통합진보당 정책방향**

목차4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원 조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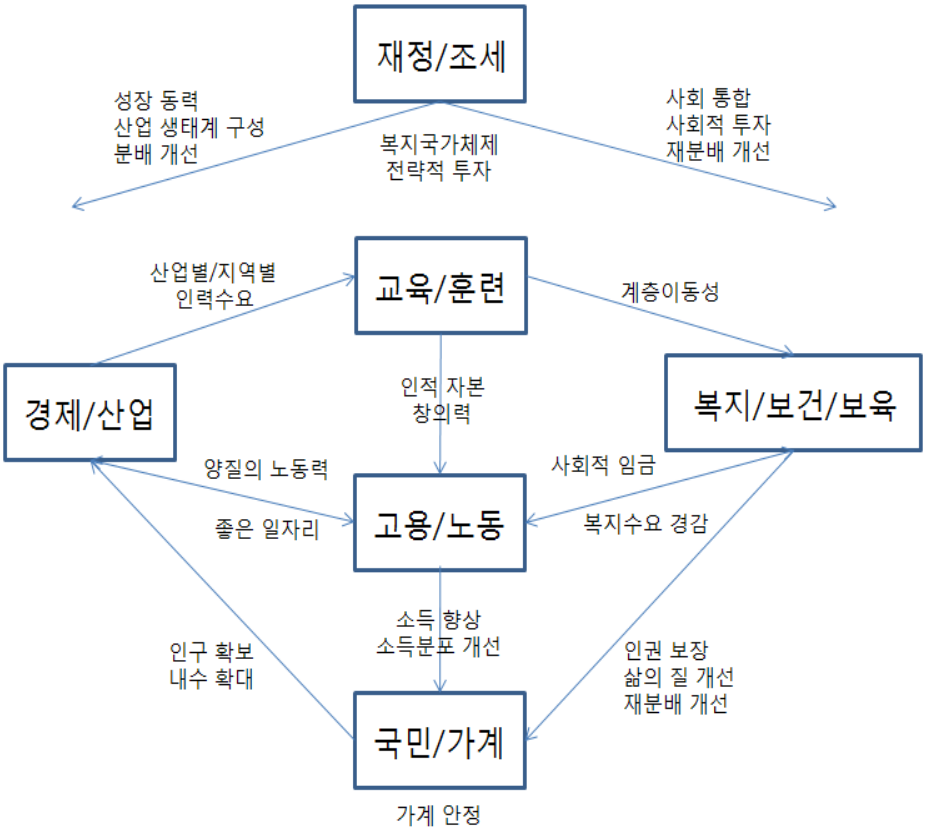
재정/조세
성장 동력
산업 생태계 구성
분배 개선
복지국가체제
전략적 투자
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재분배 개선
산업별/지역별
인력수요
교육/훈련
계층이동성
경제/산업
인적 자본
창의력
복지/보건/보육
양질의 노동력
사회적 임금
좋은 일자리
고용/노동
복지수요 경감
소득 향상
소득분포 개선
인구 확보
내수 확대
인권 보장
삶의 질 개선
재분배 개선
국민/가계
가계 안정

(단위: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A)	8.44	12.36	12.95	13.57	14.22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6.56	10.20	13.74	17.91	22.81
추가 가용재원 규모(D=A+B+C)	17.33	28.42	34.12	39.45	45.42
3+1재원소요(E)	9.94	14.40	18.17	19.72	22.02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 재원규모(F=D-E)	7.39	14.02	15.95	19.73	23.40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일본	17.3	룩셈부르크	25.5
슬로바키아	17.4	호주	27.1
터키	18.2	프랑스	27.1
멕시코	18.3	헝가리	27.1
한국('10년)	19.3	캐나다	27.6
미국	19.5	이스라엘	28.2
체코	20.0	오스트리아	28.4
그리스	20.3	영국	28.9
칠레	21.1	이태리	29.8
스페인	21.1	벨기에	30.2
스위스	22.4	핀란드	31.0
폴란드	22.9	뉴질랜드	33.7
독일	23.1	노르웨이	33.7
슬로베니아	23.1	아이슬란드	34.0
아일랜드	23.7	스웨덴	34.8
포르투칼	23.7	덴마크	47.2
네덜란드	24.6	OECD평균	25.8

민주통합당
DEMOCRATIC UNITED PARTY

민주통합당의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6

배포일 일
담당 신두식 정책실장 연락처

민주통합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10대 실천과제」 발표

1.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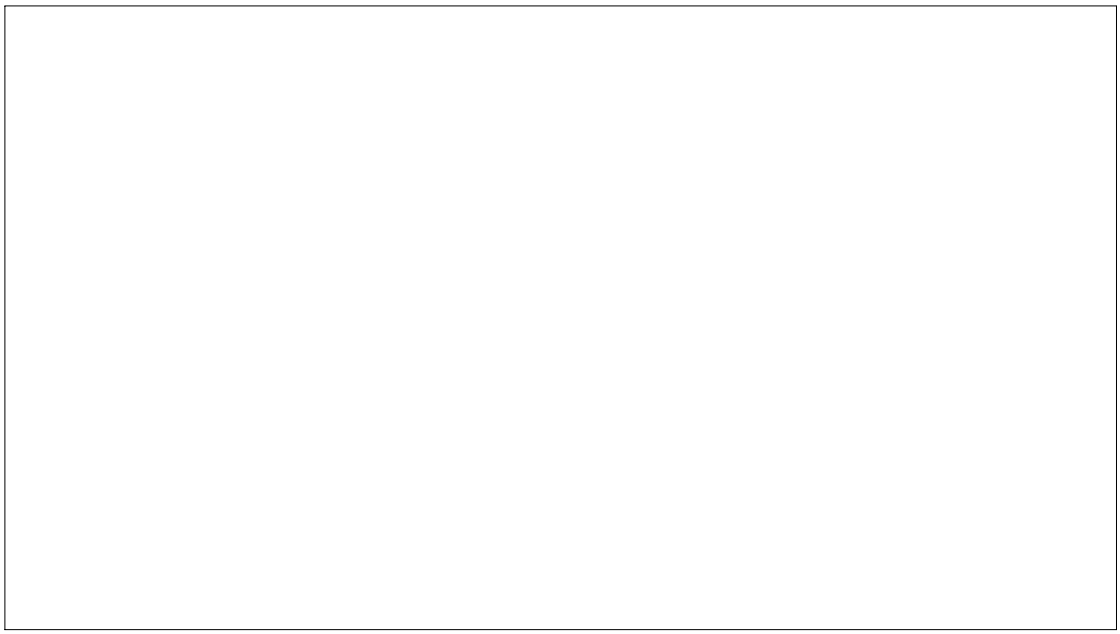

2.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

<실천과제1>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26
국세수입총액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1,040개(12.4%)	7,377개(87.6%)	8,417개
감면금액	1조4,505억원(85.2%)	2,522억원(14.8%)	1조7,027억원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 법인수	756개(6.4%)	11,008개(93.6%)	11,764개
감면금액	1조687억원(58.0%)	7,730억원(42.0%)	1조8,417억원

	감면 前 과세표준액	최저한 세율
일반기업	~100억원	10%
	100억~1,000억원	11%
	1,000억원~	14%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7%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 : 감면 前 산출세액의 35%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고용유지시 적용)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시 적용)	2%	2%	3%
계	5%	6%	7%

<실천과제2>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과세표준	현행	개선안
~1,200만원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	38%	

구 분	과세대상자		세수 증가		
	종합소득 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
과표 '1.5억원 초과' 신설, 세율 38% 적용하는 경우	86,000명 (전체의 2.3%, 납세자의 2.9%)	53,000명 (전체의 0.35%, 납세자의 0.57%)	6,950억원	3,200억원	1조150억원

* 2010년분 소득세 기준
* 종합소득신고자는 3,785,000명, 종합소득 납세자는 2,939,000명
*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자는 15,177,000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납세자는 9,221,000명

총급여액	현행 공제	개 선 안
~500만원	80%	현행
500만~1,500만원	400만원+500만원 초과분×50%	
1,500만원~3,000만원	900만원+1,500만원 초과분×15%	
3,000만원~4,500만원	1,125만원+3,000만원 초과분×10%	
4,500만원~1억원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5%	1,275만원+4,500만원 초과분의×5%
1억원~1.5억원		1,550만원+1억원 초과분×3%
1.5억원~		공제 폐지

<실천과제3>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현 행		상위세율 인상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10%	~2억원	10%
2억원~200억원	20%	2억원~500억원	22%
200억원~	22%	500억원~	25%

구 분	과세대상자		세수 증가		
	'2억~500억원'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2억~500억원'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계
법인세 과표 '2억~500억원' 구간에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하는 경우	47,894개 (전체의 10.9%,납세법인의 20.2%)	358개(전체의 0.08% 납세법인의 0.15%)	-	2조8,189억원	2조8,189억원

* 2010년분 법인세 기준

* 전체 법인은 440,023개, 법인세 납세법인은 236,742개

순위	국가	법인세율(%)	
1	스위스	8.5	(21.2)
2	아일랜드	12.5	(12.5)
3	아이슬랜드	15.0	(15.0)
3	독일	15.0	(30.2)
5	칠레	17.0	(17.0)
6	캐나다	18.0	(29.5)
7	폴란드	19.0	(19.0)
7	슬로바키아	19.0	(19.0)
7	체코	19.0	(19.0)
7	헝가리	19.0	(19.0)
11	터키	20.0	(20.0)
12	룩셈부르크	21.0	(28.6)
13	한국	22.0	(24.2)
14	그리스	24.0	(24.0)
15	오스트리아	25.0	(25.0)
15	덴마크	25.0	(25.0)
15	포르투갈	25.0	(26.5)
18	네덜란드	25.5	(25.5)
19	핀란드	26.0	(26.0)
20	스웨덴	26.3	(26.3)
21	이탈리아	27.5	(27.5)
22	노르웨이	28.0	(28.0)
22	영국	28.0	(28.0)
24	멕시코	30.0	(30.0)
24	호주	30.0	(30.0)
24	뉴질랜드	30.0	(30.0)
24	스페인	30.0	(30.0)
24	일본	30.0	(39.5)
29	벨기에	33.0	(34.0)
30	프랑스	34.4	(34.4)
31	미국	35.0	(39.2)
평균		23.8	(25.9)

* ( )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 포함한 세율

* 출처 : 기획재정부(원자료는 OECD Tax Database)

〈실천과제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구 분	신고건수	원천징수 소득세
이자소득	110,533	2조5,039억원
배당소득	47,254	1조3,330억원
계		3조8,369억원

〈실천과제5〉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실천과제6〉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률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지분률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	지분률 3%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세율 : 1년이상 보유주식 20%, 1년미만 보유주식30% (다만 중소기업주식 10%)

〈실천과제7〉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단위 : 백만원)

한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48	1,200	217	98	621	75	721	3,169	277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9년 기준)

〈실천과제8〉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실천과제9〉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실천과제10〉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한 국	19.3(33.4)	OECD 평균	25.8	일본	17.3(199.7)
미 국	19.5(93.6)	스위스	22.4	독 일	23.1
호 주	27.1	영 국	28.9	이탈리아	29.8
노르웨이	33.7	스웨덴	34.8	덴마크	47.2

* '08년 기준, 한국은 '10년 기준

**( )는 2010년 국가채무/GDP 비율

조세정의 실현,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정책	목표	방안
부자증세!	고소득 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상
조세 형평성 확대!	자산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탈세 근절!	자본소득과세 신설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복지재정확보	비과세 감면 축소	특혜적 비과세 감면을 복지재정으로
재정 개혁!	SOC사업정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지방재정확충	국가및 지방재정법 개정

(단위:조,%)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예상)[23]	1,357	1,425	1,496	1,571	1,649
복지예산	121	158	197	239	285
GDP대비복지예산비율	8.9	11.1	13.2	15.2	17.3
국세	242.3	264.8	282.9	302.2	322.7
지방세[24]	55.4	58.2	61.1	64.2	67.4
조세부담률	21.9	22.7	23.0	23.3	23.7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개정 효과	소득세 증가분	20,728	22,821	25,132	27,685	30,506
	법인세 증가분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종부세 증가분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금융과세 증가분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비과세감면정비	104,645	170,687	182,336	194,755	207,994
	합계	**291,449**	**371,576**	**397,869**	**425,617**	**454,896**
세제변화 감안한 총 국세전망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토론문

1. 공약의 내용

2. 견해

각 정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관한 검토

조세정책, 복지재원마련 정책, 재정건전화 정책에 관하여

1. 현 시기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과 생각

2. 2012년부터 향후 5년간의 상황

3.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정책 쟁점

4.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총액	147.8	152.0	163.4	179.3	205.0	212.8	209.7	226.9
명목GDP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2.8
조세부담률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 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조세부담률(%)	19.3 (20.7)	19.5	17.3	27.1	23.1	29.8	28.9	34.8	25.8
국민부담률(%)	25.1 (26.5)	26.1	28.1	43.2	37.0	43.3	35.7	46.4	34.8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10년판) / * ( )는 '08년 기준

5. 새누리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6. 민주통합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7. 통합진보당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8.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바람.

토론문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12
03
06
~
07